



< 수시 공시 >

2011.12.30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제3항 제5호에 의거, 당사에서 운용 중인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며,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(투자신탁의 해지)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1. 해당 집합투자기구 및 내역

구분	집합투자기구 명칭	발생일 설정잔액(원)	발생일 순자산총액(원)	기준가격
1	신영마라톤분할매수증권자투자신탁2호 [주식혼합]A형	1,095,832,357	1,028,477,639	938.54
2	신영마라톤분할매수증권자투자신탁2호 [주식혼합]C2형	1,104,052,005	1,132,296,603	1025.58
3	신영마라톤분할적립증권자투자신탁 [주식혼합]A형	2,596,206,124	2,451,111,108	944.11
4	신영마라톤분할적립증권자투자신탁 [주식혼합]C2형	3,246,646,268	3,318,483,588	1022.13

2. 공시 사유 : 소규모펀드(1개월)

3. 발생 일자 : 2011.12.29(목)

4.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(<http://www.kofia.or.kr>), 집합투자업자(<http://www.syfund.co.kr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